

第205回國會 政 治 構 造 改 革 立 法 特 別 委 員 會 會 議 錄 第3號

國會事務處

日 時 1999年7月8日(木)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501號)

**議事日程**

1. 幹事改選의件
2. 小委員會委員改選의件
3. 委員會運營에관한件

**審査된案件**

- |                     |    |
|---------------------|----|
| 1. 幹事改選의件 .....     | 1面 |
| 2. 小委員會委員改選의件 ..... | 2面 |
| 3. 委員會運營에관한件 .....  | 2面 |

(09시47분 개의)

朴昌賢 입법조사관입니다.

○委員長 林采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朴出海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林采正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들께서 인사를 하시겠는데 지금 새로 보임되신 분들중에서 邊雄田 위원만 출석해 계십니다.

邊雄田 위원 인사해 주시지요.

○邊雄田委員 邊雄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委員長 林采正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俞炳坤 전문위원입니다.

徐道錫 입법조사관입니다.

**1. 幹事改選의件**

(09시51분)

○委員長 林采正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개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서 국회법 개정안의 심사 및 위원회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李良熙 위원께서 자유민주연합의 대변인직을 맡게 되신 관계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연합측에서는 金學元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왔으므로 金學元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學元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委員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정치개혁특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

의 간사님과 같이 협의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采正 수고하셨습니다.

## 2. 小委員會委員改選의件

(09시52분)

○委員長 林采正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일부 위원님들이 사·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劉容泰 위원 邊雄田 위원님을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鄭東采 위원 許南薰 위원님을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金學元 위원님을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는 지난 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해당 소위원회에 넘겨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委員會運營에관한件

(09시53분)

○委員長 林采正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을 위하여 8차에 걸쳐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한 결과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거의 합의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및 기타 정치관계법은 아직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심사활동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나, 또 우리 국회 운영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치관계법의 심의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宣浩委員 아까 金學元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정말 국민들앞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볼 때 면목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시한이 7월16일까지로 지금 연장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과연 또 연장이 될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선 다른 소위는 놓아두더라도 국회법 소위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뺀 합의된 부분이라도 일단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합의된 내용에는 과거에 저희들이 고치고자 했던 많은 진보적이고 개혁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우리가 의정생활을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미합의된 부분은 다음에 계속 논의해서 추가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합의된 것은 일단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운영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서 전의를 올립니다.

○申榮國委員 방금 柳宣浩 위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국회관계법소위원회에서 8차에 걸쳐 소위원회활동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당측에서 인사청문회 관계로 공동여당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소위에서 국회법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문제라든가 대정부질문 방법이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도 아직 여야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안에 일부 합의본 사항만 가지고 1차 법안을 만들고 2차로 또 하자고 하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측에서는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문제와 대정부질문문제에 있어서 합의된 안을 내놓아서 그것이 합의된 다음에 우리가 일괄 국회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申榮國 간사께서 만일에 공동여당의 안이 만들어진다면 소위를 열어서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라면 저희들이 오늘

내일 사이에라도 공동여당의 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위를 열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다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申榮國委員 그 동안에 우리가 여덟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인사청문회 관계하고 대정부질문에서 그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여당이 인사청문회 관계 때문에 안을 못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공동여당이 단일안을 내놓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소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金學元委員 지금 우리가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국회법 외에도 다른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우리가 시한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서로 협의하고 토론을 하고, 시한연장 문제는 또 제가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동여당의 공동안이 반드시 나와야 정치개혁특위가 진행된다고 하는 얘기는 꼭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공동여당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3당이 엄연히 각각 존재하는 것인 만큼 3당의 간사들이, 또 3당의 각 소위원회들이 각각의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무리를 맞대고 앉아서 충분히 의견을 나눈다고 하면 얼마든지 단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여당에서 단일안이 꼭 나와야 이 소위원회가 진행되고 협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라도 3당의 간사끼리 또 소위원끼리 계속 협상을 진행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 시한안에라도 몇 가지 법안을 타결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이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장, 연장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빠른 시일내에 선거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 일단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속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을 금년 말까지로 대폭 늘려놓고 그렇게 하고서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관계되는 법들을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申榮國委員 저도 金學元 위원 말씀에 두번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년말까지 시한을 해놓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첫번째 말씀하신 국회법을 이달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柳宣浩 위원이 말씀한 대로 일부 된 것만이라도 먼저 법안통과를 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국회법이 일괄 전부 다 되어야 되지 중요한 부분은 미결상태로 있으면서 덜 중요한 부분만 합의되었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하는 것은 저희 당에서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委員 제 말씀을 약간 곡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결하자는 것은 아니고 17일까지 만이라도 공동여당이 먼저 안을 내놓고 그리고 야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당이 같이 계속 폭넓게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委員長 林采正 金榮珍 위원 말씀하세요.

○金榮珍委員 본회의가 10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오랜만에 우리가 이 정치특위를 열어 가지고 운영에 관한 안건을 지금 전체회의에서 논한다는 것은 조금 어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자주 모여야 할테니까 우선 3당 간사간에 운영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를 본 다음에 각당 위원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전체회의가 소집되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林采正 지금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쁜 시간입니다. 지금 金榮珍 위원께서 앞으로 운영일정을 3당 간사들이 모여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위원장도 개인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 원칙에는 좋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구조개혁특별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상황이 너무 미미합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간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럴 때는 여러 가

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치구조개혁특위의 일정이 남아 있는 시간만이라도 각 소위원회별로 열심히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는 내에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내에서라도 합의를 해나가고 또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邊精一 위원 무슨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邊精一委員 예.

○委員長 林采正 말씀하세요.

○邊精一委員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동안 정치개혁특위가 상당히 지지부진해 온 것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할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조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기록을 위해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여권측에다가 국회제도개혁특위를 하는 기간중에도 정당제도 또 선거제도에 관한 소위원회를 병행해서 합시다 하는 얘기를 몇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3월 이후에 회의가 한번도 소집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가 통 소집이 안되다가 이제 회의를 소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면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간사회의를 먼저 한번 해서 회의소집 여부를 의논을 해봅시다 해서 결국은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듣기에 따라서는 이 정치개혁특위가 그 동안 공전되어 온 것이 마치 우리 나라당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개혁특위 시한이 7월 16일까지인데 물론 이것은 본회의 의결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金學元 위원의 말씀대로 시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柳宣浩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미 합의된 것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국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치고 다시 정기국회에 가서 또 고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에 관해서 고칠 것이 있는 한은 그 법 단일법

률에 관해서는 완전하게 결론을 내리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제도와 법이라는 것이 어느 단일법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제도와 법률 서로간에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법률의 어느 조항을 고치면 따라서 B법의 어느 조항도 반드시 고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앞으로 하자는 것은 전적으로 좋습니다마는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아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柳宣浩委員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采正 柳宣浩 위원 말씀하십시오.

○柳宣浩委員 边精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협상의 원칙이 국회법도 정당법이나 선거법과 연관이 있다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법내에서도 지금 미타결된 청문회하고 대정부질문제도를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회의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청문회도 저희들도 대상을 늘리자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몇 개를 더 하느냐 거기서 지금 걸려 있거든요. 대정부질문제도도 개선을 하자는 데는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다만 미미한 방법상에서 몇 가지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정하자는 데는 다 합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들간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간에 전향적으로 개정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자고 그러면 연기방침이 옳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하는데 어쨌든간에 좀 가시적인 성과도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마당에 마치 이것이 남북협상 하듯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국회법 분야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분리를 해서 일단 상반기에 이것이라도 우리가 했습니다 하고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采正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3당 간사회의를 열어서 그 중에서 차후 운영 세부일정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

떻든 각 소위원회에서 현안문제들을 심도있게 토의를 해주시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에 간사위원회들과 협의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산회)

#### ○出席委員

林采正	申榮國	金榮珍	盧基太
邊精一	李相培	鄭亨根	李相洙
金榮煥	朴宗雨	柳宣浩	金學元
邊雄田			

#### ○出席専門委員 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朴奉國
專門委員	俞炳坤
立法審議官	安秉玉
立法審議官	林仁圭

#### 【報告事項】

##### ○通知

###### 李基文議員 당선무효통지

3월17일, 議長으로부터 위 件에 대한 通知  
가 있었음.

##### ○特別委員補任

委員會	委員名	交渉團體
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	鄭東采	새정치국민회의

(4월6일자)

##### ○特別委員辭任 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	張永達	劉容泰	새정치국민회의

(4월23일자)

##### ○特別委員辭任

委員會	委員名	交渉團體
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	李相賢	한나라당

(6월10일자)

##### ○議案回附

國會法中改正法律案(1월26일 權五乙議員外 135

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1월27일 權五乙議員外 135  
人 發議)

이상 2件 2월23일자 회부됨

公職選舉 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安商守  
議員外 133人 發議)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安商守議員外  
133人 發議)

政黨法中改正法律案(安商守議員外 133人 發議)

이상 3件 4월20일자 회부됨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104人 發議)

4월28일자 회부됨

公職選舉 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李健介  
議員外 20人 發議)

5월20일자 회부됨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李信範·鄭義  
和議員外 33人 發議)

7월7일자 회부됨

##### ○請願回附

公職選舉 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관한請願(1999  
년4월9일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5층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양 건외 2인으로부터 李美卿  
의 紹介로 제출)

政黨法改正에관한請願(1999년4월9일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  
건외 2인으로부터 金洪信의 紹介로 제출)

政治資金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1999년4월  
9일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5층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 양 건외 2인으로부터 李相洙의  
紹介로 제출)

國會에서의證言·鑑定等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  
願(1999년4월9일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 건외 2인으로부  
터 柳宣浩의 紹介로 제출)

國政監查 및調查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1999  
년4월9일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5층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양 건외 2인으로부터 柳宣浩  
의 紹介로 제출)

이상 5件 4월10일자 회부됨